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 본 가이드라인은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계기관, 시설소유자 등은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적절히 참고·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의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본 가이드라인의 테러예방활동 예시 등은 기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테러 양상 변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I	테러예방활동 시 고려사항	07
1	'테러예방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08
2	테러경보의 발령	08
3	테러예방활동 방향 및 수행절차 예(例)	09
4	단계별 고려사항	10
II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	15
1	조직 · 체제구축	16
2	인력 관리	18
3	장비 관리	18
4	시설 관리	20
5	통신 관리	22
6	대테러 활동	24
7	교육 · 훈련	27

III

테러예방활동 예시 29

예시 1 시설내 테러예방 환경조성 예시 30

예시 2 테러위협 전화 응대 예시 31

예시 3 우편물 의심 징후 32

예시 4 인원·차량 출입관리 및 시설방호 예시 33

예시 5 테러 의심자 식별 요령 35

예시 6 테러 의심사항 및 보고대상 예시 43

예시 7 테러상황 전파 및 긴급대응 예시 45

예시 8 테러 상황별 행동요령 52

예시 9 시설 외부로 비상대피 할 경우 행동요령 58

예시 10 시설 내부에서 비상대피 할 경우 행동요령 60

I

테러예방활동 시 고려사항

1 ‘테러예방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08
2 테러경보의 발령	08
3 테러예방활동 방향 및 수행절차 예(例)	09
4 단계별 고려사항	10

테러예방활동 시 고려사항

1 '테러예방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테러예방대책'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① 인원 · 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자체 방호 계획
- ② 테러 첩보의 입수 · 전파 및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방안
- ③ 테러사건 발생 시 비상대피 및 사후처리 대책

- ▣ 다른 법령 · 규정 등에 따라 수립된 기존의 계획 · 대책 · 매뉴얼 등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경우 이를 테러예방대책으로 볼 수 있음

2 테러경보의 발령

-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테러 위험 징후가 있는 경우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 경보를 발령하고 재난방송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전파함

- 시설소유자 등은 테러경보 단계를 감안하여 시설에 대한 테러예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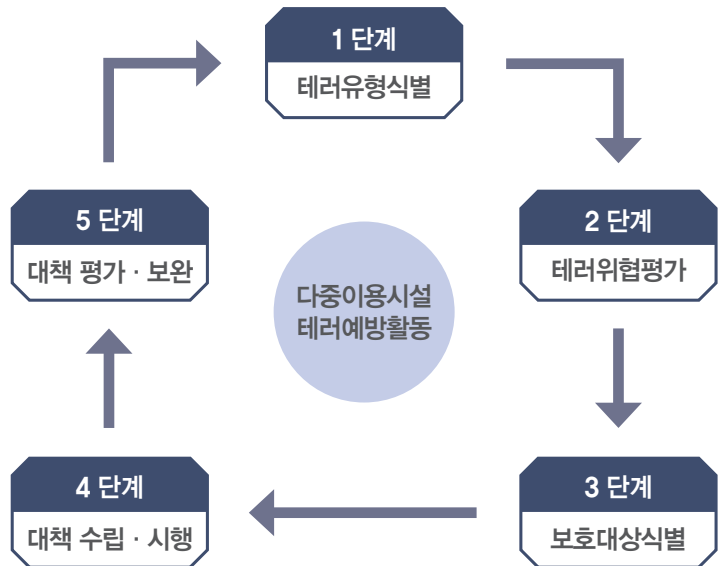
구분	테러경보 발령 주요 기준
관심	• 우리나라 대상 테러위협 첩보가 입수된 경우
주의	• 우리나라 대상 테러위협 첩보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국제테러단체 또는 연계 혐의자의 국내잠입 기도 입수 등
경계	• 우리나라 대상 구체적인 테러첩보가 입수된 경우 • 테러분자의 국내 잠입 및 활동 징후가 포착된 경우 등
심각	• 우리나라 대상 명백하고 중대한 테러첩보가 입수된 경우 • 국내에서 테러이용수단의 도난 · 강탈사건이 발생한 경우 등

3 테러예방활동 방향 및 수행절차 예(例)

■ 테러예방활동은 시설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소방·재난관리, 치안·방범활동 등 기존 안전관리 활동과의 연계·조화 및 발전성을 고려하여야 함

■ 테러예방활동의 실효성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자체적인 테러예방활동 환류(Feedback) 체제를 구축(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포함 등)하고 주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테러예방활동 환류체제(Feedback) 예시



4 단계별 고려사항

1 단계

테러유형 식별

- ‘테러유형식별’은 국내외 테러양상·유형·시사점 등을 참고하여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테러유형과 예상 테러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단계임(테러범의 특성, 테러이용수단, 테러공격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상 테러 시나리오는 코드화하여 관리할 수 있음. 코드화의 목적은 예상 테러 시나리오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제 사용자가 즉시 조회하여 참고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예상 테러 시나리오 코드화 예시

구분	테러공격 유형	테러수단	테러범의 상태	테러발생 위치	추가피해 (가능성) 여부
코드 예시	알파벳 대문자 (또는 한글)	알파벳 소문자 (또는 한글)	숫자 (또는 한글)	한글	한글
표기 방법	폭탄테러(Bomb) : B(또는 폭탄) 자살폭탄테러 (Suicide Bombing) : SB(또는 자폭) 인질테러(Hostage) : H(또는 인질) 화생방테러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weapons) : CBRN(또는 화생방) 무장공격 (Active Shooter) : A(또는 무장) 복합공격(Complex) : C(또는 복합)	총기류(firearms) : f(또는 총기) 폭발물(explosive) : e(또는 폭발물) 화생방 : cbmn(또는 화생방) 차량(vehicle) : v(또는 차량) 항공기(aircraft) : a(또는 항공기) 선박(watercraft) : w(또는 선박) 드론(drone) : d(또는 드론) 흉기(hand weapon) : h(또는 흉기) 복합무기(combination) : c(또는 복합무기)	테러범 사망 또는 도주 (현장에 없음) : 0 (또는 부재) 1명의 테러범이 계속 현장에 있음 : 1 (또는 단독) 다수의 테러범이 계속 현장에 있음 : 2 (또는 다수)	시설내부 : 내 (또는 내부) 시설외부 : 외 (또는 외부)	가능성 없음 : 무 (또는 가능성 무) 화재 : 화(또는 화재) 건물붕괴 : 붕(또는 붕괴) 추가 납치 : 납(또는 추납) 추가폭발 : 폭(또는 추폭) 추가총격 : 총(또는 추총)

2 단계

테러위협평가

- ‘테러위협평가’는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위험수준을 반영하여 테러예방활동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테러위협은 정부가 발령하는 테러경보 · 시설의 특성 등을 토대로 평가하거나, 기존의 안전 · 보안 관련 위험성 평가방법 또는 그 외 다양한 위험성 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시설의 특성 등을 토대로 테러위협수준 평가 시 자체 평가사항 예시

- 1 최근 테러관련 정부기관, 미디어 등에서 발표한 안보동향 및 정보는 어떠한가?
- 2 시설이 테러범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있거나 주변시설과 비교하여 노출되어 있는가?
- 3 시설이 국가 전체, 소재 도시 또는 구역에서 잘 알려져 있는가?
- 4 테러범의 주위를 끝만한 시설의 특성이 있거나 시설 내 행사 등이 계획되고 있는가?
- 5 테러범의 주위를 끝만한 시설 또는 행사 등이 시설의 주변에 계획되어 있는가?
- 6 시설이 주민의 일상 또는 사회 · 도시의 생존 등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인근의 다른 시설에 비하여 중요성이 큰가?
- 7 시설이 소재지 등에서 상징적 가치를 갖고 있는가?
- 8 시설에 대한 공격 징후가 포착 되었는가?
- 9 식별된 테러유형에 따라 테러를 감행하기 쉬운가?
- 10 예상 테러 시나리오에서 식별된 테러 수단은 쉽게 구할 수 있는가?
- 11 경비 상태 등을 감안할 때 시설에 공격을 감행하기 쉬운가?
- 12 시설에서 과거 유사형태의 범죄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가?
- 13 시설의 공격이 해당 테러범을 지지하는 다른 잠재 테러범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요인이 있는가?
- 14 시설을 공격할 경우 인명 살상, 시설 파괴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가?
- 15 시설의 취약성이 높고 인근지역에 대해서도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가?
- 16 시설에 대한 테러발생 시 시설의 작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가?
- 17 시설에 대한 테러 발생 시 전국단위, 도시 전역 또는 소재 지역의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가?
- 18 시설 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공간이 있는가?
- 19 교통 등을 감안할 때 테러범이 시설에 접근하기 쉬운가?
- 20 테러범이 테러행위를 하기 위하여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가?
- 21 시설의 특성을 감안할 때 테러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간 · 시간대를 특정할 수 있는가?
- 22 시설에 대한 테러 발생 시 시설을 대체, 복구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가?
- 23 테러예방 · 안전관리 활동에 관하여 최고경영자, 대테러책임자 등과 현장 종사자간 소통이 원활한가?

3 단계 보호대상 식별

■ ‘보호대상 식별’은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테러의 대상과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시설관련 정보 등을 구체화하는 것임

■ 보호대상은 다중이용시설의 성격, 발생 가능성이 있는 테러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직접적인 공격대상’, ‘간접적인 공격대상’ 및 ‘테러 악용 가능 정보’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보호대상 예시	
보호대상별 유형	보호대상의 사례
직접적인 공격대상	• 사람(시설 이용자, 근무자, 협력업체 직원, 방문자, 점포주 등) • 시설(건물, 교통수단, 주차장, 승강장, 여객터미널 등)
간접적인 공격대상	• 영업활동의 중단 또는 위축 • 대중 이미지 악화 • 공포 또는 혼란의 확산
테러 악용 가능 정보	• 건물구조 • 시설관련 중요 정보 또는 서비스 상세 • 통제구역의 출입구에 대한 접근방법 • 직원의 신원, 업무분장 또는 출입증 • 건물 내 통로 및 사무실 배치 • CCTV 등 감시 장비 배치와 운용 등

■ 테러경보 등급의 상향, 테러 징후가 농후한 경우 등 보호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보호대상의 중요성을 나눌 수 있음

보호대상 분류표 예시		
구분	보호대상 유형	구체적인 보호대상 예(例)
최우선	직접적인 공격대상	사람
	간접적인 공격대상	—
	테러공격을 위한 필요정보	—
우선	직접적인 공격대상	시설
	간접적인 공격대상	공포 또는 혼란의 확산
	테러공격을 위한 필요정보	건물구조, 통제구역 출입구 접근방법
일반	직접적인 공격대상	—
	간접적인 공격대상	영업활동 위축, 대중 이미지 악화
	테러공격을 위한 필요정보	건물내 통로 및 사무실 위치

4 단계

테러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

- 테러유형, 테러위협 정도 및 보호대상 등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테러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단계임
- 테러예방대책에는 사전에 테러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 테러 발생 시 긴급대응과 사후처리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테러예방활동은 조직·체제구축, 인력관리, 장비관리, 시설관리, 통신관리, 대테러 활동, 교육·훈련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

테러예방대책에 포함될 수 있는 테러예방활동 예시

아래의 내용은 예시이므로 시설 자체 특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테러 예방활동을 정하고 이를 테러예방대책에 포함할 수 있으며, 특히 인접한 다른 시설 등과의 협력 필요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구분	테러예방활동 예시
1 조직·체제구축	• 대테러책임자 지정 • 테러대응 조직 구성 • 테러유형 식별 및 예상 테러 시나리오의 작성 • 테러위협 평가 및 보호대상 식별 • 테러예방대책의 수립, 적정성 평가 및 보완 등
2 인력 관리	• 적정인력의 확보 • 직원에 대한 인적보안 등
3 장비 관리	•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4 시설 관리	• 시설 방호 • 주요 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 대피경로, 비상대피시설 확보 및 운용 • 사후 처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등
5 통신 관리	• 비상통신체계 구축 • 전화 테러 위협 대응 • 우편물 관리 등
6 대테러 활동	• 순찰 및 주차관리 활동 • 의심사항의 보고 및 전파 • 긴급 대피 및 대응활동 등
7 교육·훈련	• 전문화 교육·훈련의 주기적 시행 등

상세한 사항은 Ⅱ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단계

테러예방대책의 적정성 평가 및 보완

- 테러예방대책은 테러공격·테러수단·테러범 등의 양상 변화, 시설의 변화(리모델링·재건축 등), 근로자 변동, 보안시스템의 변화 및 교육·훈련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되고 보완되어야 함
- 평가는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방법과 주기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시설의 대테러담당자 대상 조사(대면 또는 서면)
 - 시설 이용자·외부 전문가 대상 조사(대면 또는 서면) 등
-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시설을 관장하는 중앙부처 등을 통하여 대테러 센터에 테러예방 적정성 평가, 현장 지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II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

1 조직 · 체제구축	16
2 인력 관리	18
3 장비 관리	18
4 시설 관리	20
5 통신 관리	22
6 대테러 활동	24
7 교육 · 훈련	27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

1 조직 · 체제구축

‘조직 · 체제구축 활동’은 테러예방활동의 기틀을 갖추는 활동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함

대테러책임자 지정

- 테러예방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테러예방활동의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함
- 대테러책임자는 시설소유자, 관리자 또는 최고경영자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 시설 내외의 리모델링 · 재건축, 보안시설의 설치 등 테러와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함

대테러책임자 역할 및 임무 예시

- 테러유형식별, 테러위협평가 및 보호대상 식별 관련 업무
- 테러예방대책의 수립 · 시행, 적정성 평가 및 보완 관련 업무
- 테러 위험시 대응 및 관계기관 전파 관련 업무
- 비상대피여부 결정, 대피장소 지정 등 비상대피 관련 업무
- 관련 근무자 교육 및 훈련 관련 업무
- 기타 대테러 활동 관련 업무

테러예방활동 조직 구성 · 운영

- 테러예방 실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원과 직급으로 구성된 조직이 필요함
- 동 조직은 테러발생 전(前) · 후(後)의 업무 성격, 시설의 크기, 특성 등에 따라 상설 또는 비 상설 조직으로 구성되거나 기존 조직이 활용될 수 있음

- 동 조직의 역할·임무 부여 시 안전·보안업무 등 유사업무와의 연계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별 임무카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배포·숙지시키는 등 개인별 임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테러예방활동 조직의 역할은 아래와 같이 테러발생 전(前)·후(後)로 구분할 수 있음

테러발생 전(前)·후(後) 역할 예시	
테러발생 전(前)	테러발생 후(後)
• 테러예방대책 수립·평가·보완 • 테러경보 등 테러관련 정보 취급 • 인원·차량 출입관리 및 시설 방호 • 폭발물 탐지 용이성 확보 및 폭발 시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시설 관리 • 시설 내·외 자체 순찰 • 테러첩보 입수 또는 위험감지 시 관계기관 전파 및 협력체계 구축 • 시설내외 긴급 통신망 구축·운용 • 테러신고방법 홍보, 비상상황 경보방송 문안 준비 • 근무자 및 서비스 정보 보안 관리 • 보안검색 장비 구축 및 운용 • 비상대피 시설, 물품, 장비 확보·운용 • 비상대응을 위한 물품, 장비 확보·운용 • 교육·훈련 시행 등	• 테러발생 직후 상황 파악 및 전파 • 시설내 비상상황 경보 방송 • 테러발생 초기 시설 이용자 등의 혼란 최소화를 위한 활동 수행 • 가능한 경우 현장 대응 • 비상대피로 사전 확인 및 유도 • 테러발생 초기 부상자 응급조치 • 사후처리 대책 시행 등

테러예방활동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

- 시설에서 테러유형 식별, 테러위험 평가, 보호대상 식별, 테러예방 대책 수립·시행 및 대책의 적정성 평가·보완 등 '테러예방활동 환류체제'를 일상의 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내규 등에 동 업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인력 관리

‘인력관리 활동’은 테러예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관리하는 활동을 말함

적정인력의 확보

- 테러예방활동을 담당하거나 수행할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는 인원·차량 출입관리, 방호 등 평상시의 활동 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 시 대응·대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침

* 인력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테러예방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대테러책임자, 대테러담당자, 보안담당 등
-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테러관련 징후를 파악하는 등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종사자(시설관리자, 안내원 등)

- 필요인력은 시설의 특성, 시설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테러유형, 테러 위협 수준, 보호대상, 보안·검색장비 운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결원이 발생한 경우 가능한 빠른 기간 내 충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보안 관리

- 시설의 중요한 정보가 테러범 등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활동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함

- 보안 관리의 대상은 직원, 협력업체 직원, 시설 내 점포주 등 시설에서 일을 하는 종사자들이 포함될 수 있음

- 보안 활동은 직원 등이 내부고객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비밀유지 서약서의 작성, 직원 등에 대한 시설의 정보보안 정책 공지, 보안 책임 이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퇴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음

3 장비 관리

‘장비 관리 활동’은 테러예방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관리하는 활동을 말함

테러예방활동 장비의 결정 및 비치

- 구비 장비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설의 특성, 시설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테러유형, 테러위협 수준, 보호대상, 장비운용 인력, 소방·방법 등 기존에 설치된 안전장비의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테러 예방·대응 장비의 경우 테러경보 단계의 상황, 테러 첩보의 입수, 테러위협 수준 등에 따라 운용 장비 수, 운용시간 등이 증감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비를 보유할 필요가 있음

테러예방활동 관련 장비 예시	
테러 예방·대응 관련 장비 예시	비상대피 관련 장비 예시
• CCTV • 출입통제장치 • 출입문, 창문 잠금장치 • 경보장치 • 금속탐지기 • X-ray 투시기 • 문형금속탐지기 • Radiation Portal Monitor (방사능 검색기) • 폭발물 탐지견 • 돌진차단장치 (타이어킬러, 바리게이트, 로드블록 등) • 무전기 • 방탄조끼, 방폭담요 • 가스총, 테이저 건 등	• 손전등 • 조명시설 (대피유도등, 비상조명 등) • 무전기 • 소화기 • 방독면, 마스크 • 손도끼 • 비상탈출 사다리, 완강기 • 공기호흡기 • 응급약품 등

- CCTV는 사각지대 없이 전 시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설치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출입구, 주차장, 비상대피로, 환풍기, 물품보관함, 쓰레기통 등 테러범이 잠복하거나 폭발물을 은닉하기 쉬운 위치에는 고성능 CCTV의 설치를 고려해야 함

장비 관리·운용계획의 수립

- 장비의 원활한 관리·운용을 위하여 테러예방대책 등에 구체적인 관리·운용계획을 포함할 수 있으며, 동 계획에는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주기(제조사의 권고사항 반영)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시설 관리

시설의 설계 및 비상대피로 설치

‘시설 관리 활동’은 구조물의 설치, 시설 관리·운영 측면에서 테러범의 접근을 차단하고 테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활동을 말함

- 시설소유자는 시설 리모델링, 재건축 등 추진 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및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 건축설계 기법)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CPTED를 통한 3단계 방어선 구축 사례는 아래와 같음

CPTED를 통한 3단계 방어선 구축 사례		
1차 방어선 (시설외부)	접근통제	• CCTV · 조명 설치, 주 · 정차 금지구역 설정 등
	탐지	• CCTV · 조명 설치 등
2차 방어선 (시설외벽)	접근통제	• CCTV 설치, 주 · 정차 금지구역 설정 • 출입문, 외벽, 지붕, 각종 개구부, 창문 관리 등
	탐지	• CCTV 설치 • 금속탐지기, X-Ray 투시기 등 탐지장비 설치 등
3차 방어선 (실내공간)	접근통제	• CCTV 설치 • 물품보관함, 쓰레기통의 위치 관리 • 폭발물을 은닉할 수 있는 은폐공간 및 테러범 등이 숨을 수 있는 은신공간 최소화 • 중요장소 접근통제구역 설정 • 침입경로 및 이동경로에 대한 시설보안 등
	탐지	• CCTV 설치 • 투명 쓰레기통, 투명한 물품보관함 등

- 비상 상황 시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시설의 규모를 감안하여 충분히 많은 수(규모)의 비상 대피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외부로 통하는 비상대피로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히 표시되고 필요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

- 테러발생시 외부로의 대피가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내부에 긴급대피공간의 확보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시설의 규모를 감안하여 긴급대피공간의 규모와 수를 정하여야 하며 다층구조의 경우 각 층 마다 내부 대피공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긴급대피공간의 출입문은 테러용의자 진입 방지를 위해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하고 무전기 등 긴급통신장비, 방독면, 응급약품 등을 비치할 필요가 있음

※ 시설 내 긴급대피공간은 표시를 하지 않고 직원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련사항을 숙지 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외부와 연결되는 출입문 및 창문

- 외부와 연결되는 출입문 · 창문은 테러범이 침입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무단 침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운용되어야 함

- 외부와 연결되는 출입문은 쉽게 열리지 않는 재질로 만들고, 조명과 잠금장치가 잘 되어 있어야 하며,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 유리 파편은 테러의 피해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된 유리 출입문 · 창문 등에 대해서는 파편의 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시설 내 테러예방 환경조성

예시 1 참고 p.30

- 폭발물, 화생방 물질 등 테러수단이 시설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고 반입된 경우 식별이 용이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투명 쓰레기통의 사용, 화장실 · 비상대피로 등에 대한 청소 · 정돈상태 유지, 간이 구조물에 대한 관리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음

사후 처리에 필요한 시설 확보

- 테러유형 식별 시 도출한 예상 테러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테러발생 후 시설의 서비스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복구계획 및 시설 등을 갖추 필요 있음

5 통신 관리

비상연락망 및 통신체계 구축

‘통신 관리 활동’은 테러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통신체계를 구축하고 전화 테러위협 및 우편물을 통한 폭탄·화생방 테러 등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함

- 시설 내 의심자의 발견·위협전화 등 테러정보가 입수되었거나 테러 발생 시 국정원(신고처 111), 경찰서(신고처 112), 소방서(신고처 119) 등 관계기관과 시설의 대테러책임자 등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동 체계에는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담당자 성명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상황 전파 우선순위가 고려되어야 함

- 대테러책임자는 상황 발생 시 시설 내 인원의 비상대피 필요성을 판단하고 신속히 시행하여야 함

- 비상대피로 안내 등을 지휘하기 위하여 현장 근무자와의 통신체계(예, 무전기 등)를 사전에 확보하거나 시설 내 방송망의 이용*도 고려할 수 있음

* 테러유형 식별 시 도출한 예상 테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사전에 방송 문안(테러범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암호 사용 검토 필요)을 작성하고 이를 교육할 필요가 있음



전화 테러 협박 대응

예시 2 참고 p.31

- 휴대폰, 전화, SNS, 메일 등을 통해 테러위험을 감지한 경우 비상 연락망에 따라 그 내용을 신속히 전파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휴대폰, 전화를 통한 테러 위협 시 테러용의자(협박범)와의 통화내역을 침착하게 기록하고 동 내용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함
 - 고객 응대를 주로 하는 응대자의 책상 등에 테러위험전화 응대요령 (예시 2 참고) 등을 비치할 필요가 있음

테러위험전화 응대 전략 및 요령	
응대 전략	응대 요령
• 협박범의 감정 상태를 확인하고 가능한 진정시킬 것 • 가능한 협박범과 유대감을 형성할 것 • 시간을 지체하여 사안의 긴박성을 떨어뜨리고 사건진행 속도를 늦출 것 •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할 것	• 침착하게 응대하고 자극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말 것 • 신고자의 말을 경청하고 중간에 끊거나 방해하지 말 것 •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여 가능한 오래 말하도록 유도 할 것 • 끝말을 따라하거나 요약해서 대화내용을 확인할 것 • 대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할 것 • 예, 아니오 등의 확답을 주는 말을 하지 말 것 • 대화 중 주위사람에게 알려 녹음,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우편물 폭탄 등에 대한 대응

예시 3 참고 p.32

- 우편물(편지 · 소포 · 택배 등)을 통해 폭발물 · 화생방 물질이 운송될 가능성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함
 - 우편물 등에서 의심 점을 발견한 경우 우편물 등을 개봉하거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즉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관계기관*, 시설 내 대테러책임자 등 담당자에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함

* 관계기관은 국정원(신고처 111), 경찰서(신고처 112), 소방서(신고처 119) 등이 될 수 있으며 사전에 비상연락 할 기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6 대테러 활동

대테러 활동 시 고려 사항

‘대테러 활동’은 현장에서 테러의심자·차량 등을 신속히 발견하고 비상상황 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인력, 장비, 시설을 통합적·총체적으로 운영하는 전반적인 테러예방 활동을 말함

■ 대테러 활동은 대테러책임자, 대테러담당자, 경비요원, 고객응대요원, 내부직원, 협력업체 직원, 청소·장비관리 등 용역업체 직원, 시설 내 점포주 등 시설과 관련된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이행토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인력, 장비, 시설의 통합적 운용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

인력·장비·시설의 통합적 운용관련 주요 고려 사항

• 인력과 장비의 비율은 적정한가?

(예) 운용인력 없이 CCTV 등 장비만 설치하는 것은 효과가 미미할 수 있음

• 건물구조 등 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력규모가 적정한가?

• 시설의 취약점을 감안하여 보안장비가 설치되어 있는가?

• 인력, 장비, 시설 간의 상호보완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 CCTV 고장 등으로 시설 내 중요지역에 사각지대가 생길 경우 인원을 통한 보안활동을 강화하는 것 등을 의미함

• 테러경보 단계에 따른 탄력적 테러예방활동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경보등급	활동내용 예시
관심	인력, 장비, 시설 운용 관련 통상적 활동
주의	인력, 장비, 시설 운용 관련 경계강화
경계	인력, 장비, 시설 운용 관련 강화된 역량 투입
심각	인력, 장비, 시설 운용 관련 최고 수준의 역량 집중 투입

• 취약시기, 기간 등을 고려하여 테러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인원 · 차량 출입관리 및 시설 방호활동

예시 4 참고 p.33

- 출입관리 및 시설 방호 활동은 테러 위협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시설의 특성, 시설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테러 유형, 테러위협 수준, 보호대상, 테러경보 단계 등을 감안하여 인력 · 장비 · 시설을 통합 운용 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출입관리, 시설 방호는 기존의 안전관리 활동, 주차관리 활동 등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통합보안 시스템 운용 등

- 방범용 침입경보 · CCTV · 조명 등을 설치한 경우 이러한 장비 시스템이 통합·연동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황실 등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테러 등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CCTV 모니터링을 계속 유지 하면서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모니터 요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함
- CCTV 녹화기록을 분석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고 테러준비를 위한 정찰 · 예행연습 등의 이상 징후와 테러 의심자 유무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

CCTV 운영 시 고려사항

- CCTV에 표시된 날짜, 시간이 정확한지 확인할 것
- CCTV가 의도하는 장소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야간에 CCTV 인근의 조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것
- 기록이 제대로 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
- 기록된 영상 안에 사람 · 차량이 명확히 식별가능한지 확인할 것
- 백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
- 최소 한 달간 기록물을 보관할 것

테러 의심사항 식별 및 전파

예시 5 6 참고

p.35~44

- 출입관리, 시설 방호, 통합보안 시스템 운용 등을 통하여 테러의심자·차량·물건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테러 의심자 발견 시 안전요원 등을 통해 '도움 일이 없는지 여부'를 묻는 등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주지시키고, 국정원(신고처 111), 경찰서(신고처 112) 등 관계기관과 시설의 대테러책임자 등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여야 함
- 시설 주변에 드론이 출현한 경우 드론은 테러범들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폭발물, 화생방 물질의 운송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 위험성 판단 시 드론 조종사의 태도, 인상착의 및 드론의 상태(드론발견 시간, 드론 수량, 비행고도, 이동방향, 드론의 종류, 카메라 운반여부 등) 등을 보고 의도를 파악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테러 발생 시 긴급 대응 및 비상 대피

예시 7 8 참고

p.45~57

- 테러는 매우 짧은 시간 내 대부분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므로 시설에서는 비상대피나 대응방안 등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계획하여야 함
- 동 계획 검토 시 시설의 특성, 시설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테러유형, 보호대상, 테러상황 전파 및 긴급대응 예시(예시 7 참고), 테러 상황별 행동요령(예시 8 참고) 등을 감안할 수 있음



7 교육 · 훈련

‘교육 · 훈련 활동’은 테러예방활동과 관련된 인력에게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배양토록 하는 활동을 말함

■ 테러예방활동과 관련된 인력들이 자신의 임무를 숙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시행(구체적인 교육 · 훈련 종류, 일정 제시 필요)할 필요가 있음

- 동 계획에는 이론교육과 해당 당사자들이 안전 위주의 생활패턴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훈련이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교육 · 훈련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거나 고려할 수 있음

- 테러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방법 **예시 1** 참고 p.30
- 테러위협 전화 응대 요령 **예시 2** 참고 p.31
- 우편물 의심징후 **예시 3** 참고 p.32
- 인원 · 차량 출입관리 및 시설방호 방법 **예시 4** 참고 p.33
- 테러의심자 · 차량 등 식별 요령 **예시 5 6** 참고 p.35~44
- 테러상황 전파 및 긴급대응 요령 **예시 7** 참고 p.45
- 테러상황별 행동요령 및 비상대피 요령 **예시 8 9 10** 참고 등 p.52~61

■ 교육 · 훈련 종료 후 교육대상자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하여 해당 교육 · 훈련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III

테러예방활동 예시

예시 1	시설내 테러예방 환경조성 예시	30
예시 2	테러위협 전화 응대 예시	31
예시 3	우편물 의심 징후	32
예시 4	인원 · 차량 출입관리 및 시설방호 예시	33
예시 5	테러 의심자 식별 요령	35
예시 6	테러 의심사항 및 보고대상 예시	43
예시 7	테러상황 전파 및 긴급대응 예시	45
예시 8	테러 상황별 행동요령	52
예시 9	시설 외부로 비상대피 할 경우 행동요령	58
예시 10	시설 내부에서 비상대피 할 경우 행동요령	60

※ 본 가이드라인의 테러예방활동 예시 등은 기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테러 양상 변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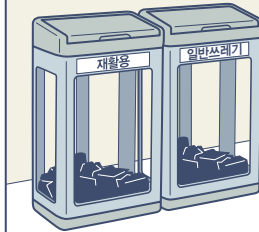
예시 1

시설 내 테러예방 환경조성 예시

- 1** 대형 유리창, 내력벽 및 중요 내력기둥 옆에 쓰레기통을 놓지 않아야 함



- 2** 내용을 확인이 용이한 투명재질의 쓰레기통 사용



- 3** 코인락커, 물품보관함 등은 락커문을 투시가 가능한 아크릴 소재 등으로 변경



- 4** 다중이용구역(출입문, 비상구, 복도, 홀, 화장실 등)에 대한 청소·정돈상태 유지



- 5** 다중이용구역 내 의자 등은 의심물품을 숨기지 못하도록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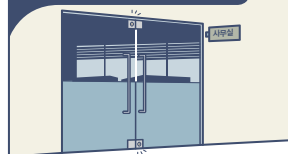
- 6** 보관실·배전함은 일반인의 무단 조작이나 위험물질의 은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 설치



- 7** 임시 안내소·매점 등 간이 구조물은 사용 전·후 검색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이 완료된 후 적절히 이동·보관되어야 함



- 8** 사용되지 않는 사무실 (창고 등 포함) 잠금 상태 유지



- 9** 모든 물품이 제자리에 있는지 주기적 확인



- 10** 전기·기계실·방재실 등 핵심 구역 출입구 등에 CCTV 운용



- 11** 테러경보 상황 시 위험물품 등의 반입이 금지되고 이를 검사할 수 있다는 안내판 비치

(외부로부터 이동 동선 상 검색 지점까지 3회 이상 노출되도록 비치)



예시 2

테러위협 전화 응대 예시

테러위협 전화 응대 요령

- 1 침착하게 응대하고 자극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말 것
- 2 신고자의 말을 경청하고 통화를 방해하지 말 것
- 3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여 가능한 오래 말하도록 유도할 것
- 4 끝말을 따라하거나 요약해서 대화내용을 확인할 것
- 5 대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할 것
- 6 예, 아니오 등의 확답을 주는 말을 하지 말 것
- 7 대화 중 주위 사람에게 알려 녹음,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테러위협 전화 응대 시 확인사항

접수일시

통화종료시각 :

발신전화번호

협박내용

질문해야 할 사항

- 어디에 사는 누구신가요?
- 언제 폭발할 것인가요?
- 폭발물을 어디에 설치했나요?
- 본인이 직접 설치하였나요?
- 협박자가 지목한 장소가 최근 변경(철거 등) 되었다고 답변 후 반응 체크
- 무슨(어떤 종류) 폭발물인가요?
- 항공기, 여객선의 경우 편명 출발시간 일치여부 확인, 혹은 편명 · 시간이 변경되었다며 반응 체크
- 지금 어디에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왜 그러세요?)
- 무슨(어떤 종류) 폭발물인가요? (어떻게 생각나요?)
- 어떻게 하면 폭발을 막을 수 있나요?

발신자의 정체

남자 ☐ 여자 ☐ 성인 ☐ 청소년 ☐ 대략 나이 _____ 세

감정상태
(해당사항 모두 체크)

침착한 ☐ 화난 ☐ 이성적인 ☐ 비이성적인 ☐ 일관된 ☐ 일관성 없는 ☐
원고 사전준비 ☐ 즉흥적인 ☐ 진지한 ☐ 장난기 ☐ 솔취함 ☐ 슬픔 ☐

언어적 특성

억양 표준어 ☐ 사투리 ☐ 외국인 ☐
언어 유창한 ☐ 어눌한 ☐ 고급단어 ☐ 속어 ☐
말 빠름 ☐ 느림 ☐ 또렷 ☐ 발음부정확 ☐ 더듬는 ☐ 변조 ☐ 코소리 ☐ 허짖은 ☐
목소리 굵다 ☐ 가늘다 ☐ 고음 ☐ 저음 ☐ 맑은 ☐ 묵선 ☐ 변조 ☐

배경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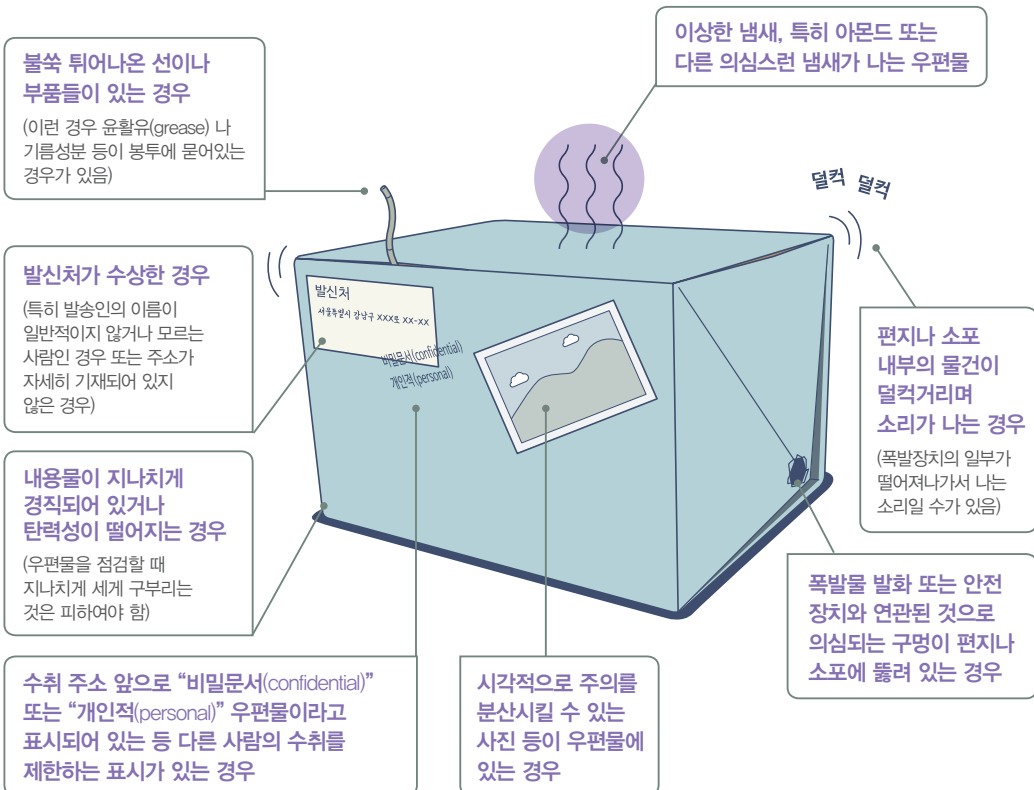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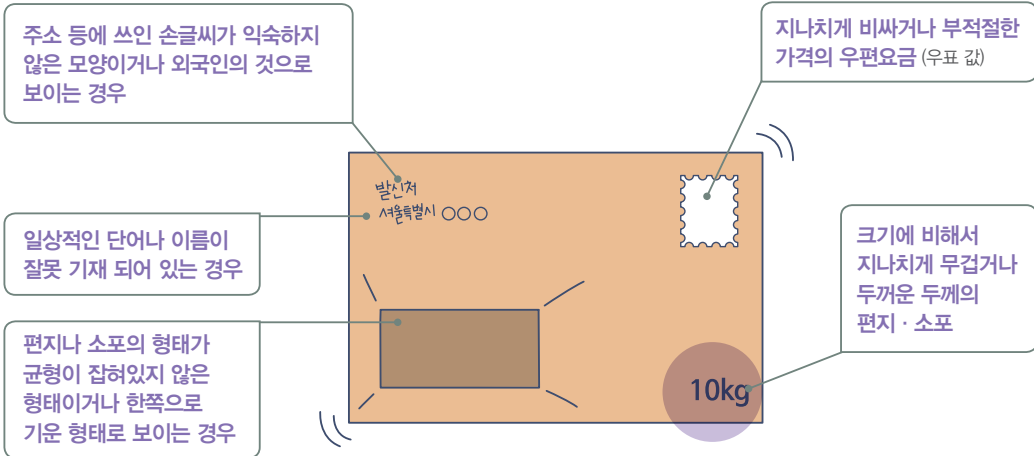
소란한장소 ☐ 공장기계소리 ☐ 음악 ☐ 사무기기소리 ☐ 사람소리 ☐ 지방사투리 ☐
동물 ☐ 비행기소리 ☐ 자동차경적 ☐ 전철 ☐ 조용한 ☐ 실내 ☐ 실외 ☐
주변안내방송 ☐ 기타 ☐

접수자

접수자 조치사항

예시 3

우편물 의심 징후



예시 4

인원 · 차량 출입관리 및 시설방호 예시

1 근무자에 의한 보안침해 보고체계 구축 (협력업체 직원, 점포주 등 포함)

- 업무 특성상 시설 내 이상 유무의 파악이 용이한 현장 근무자가 테러의심자, 폭발물 의심 물질 등 테러 의심사항을 대테러책임자 등에게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 훈련 시행

3 시설이용자의 대형 소지품 관리

- 문화 · 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판매 시설(대형 점포 등), 교통시설(선박) 등의 출입 (승선) 시 총기류 · 폭발물 · 화생방 물질 등의 반입이 제한될 수 있도록 출입구 등에서 부피가 큰 소지품(대형 가방 등)을 별도로 보관토록 할 필요가 있음

2 시설이용자 등의 출입 관리

- 테러경보 단계, 시설에 대한 테러위협 수준 등에 따라 외부와 연결되는 출입문의 운영 수를 증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비인력, 검색장비 등을 운영되는 출입문에 집중 배치하거나 동 구역에 대한 CCTV 모니터링도 강화할 수 있음
-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위협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공연·전시 또는 시설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출입문 운영 예시

관심 · 주의(통상적인 출입문 운영) →

경계(운영 개소 감축) →

심각(주요 출입문으로 제한하거나 필요시 폐쇄)

4 다중이용구역과 그 외 구역 분리(필요시 사원증 교부 등)

- 제한구역 등 다중이용구역 외 구역은 사원증 패용 등을 통해 해당 구역 근무자만이 출입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잠금장치를 활용한 통제를 실시하되, 카드키 방식은 업무별 권한 설정, 번호키의 경우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하고, 방문자가 있는 경우 출입이 끝날 때까지 관계근무자가 동행토록 하여야 함 (외부자가 허가 없이 제한구역 등에 있는 경우 발견자는 그 사실을 대테러책임자 등에게 알려야 함)
 - 공연 스태프의 경우 비표나 출입증 등으로 출입관리 필요
- 공연 · 행사 · 판매 · 전시장 등은 업무 시간 또는 활동 시간 외 일반인의 해당 구역 출입 통제가 필요함(시설 및 이벤트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5 시설 내·외 순찰 및 검색 (테러 의심자의 소지품 검색 등 포함)

- 테러의심자, 의심물품·차량 등을 사전에 찾아내고, 비상대피로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테러책임자, 경비인력 등 관계자에 의하여 시설 내·외 구역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순찰(필요시 검색)이 이루어져야 함
- 순찰 횟수는 테러경보 단계, 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 수준 등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음
- 순찰·검색 장소는 전체 시설(계단, 비상구, 복도, 화장실,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포함) 및 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까지 포함 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순찰·검색을 위하여 근무자별 담당 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순찰·검색은 최소 2인 1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순찰 중 “테러 의심사항 및 보고대상 예시 [예시 6 참고]”에 포함된 사항 등을 식별한 경우 그 내용, 인상착의, 차량 위치, 도주 방향 등을 대테러책임자 등에게 보고하고, 테러의심자 발견 시 소지·휴대품에 대한 자체 검색을 시행하거나 경찰에 신고·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예시 6 참고 p.43~44

6 주차 관리

- 차량폭탄(차량적재 급조폭발물)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심차량이 시설에서 최소 3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시설 앞 볼라드 설치 등 검토), 건물붕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장소(다중이 모여 있는 구역에 접해 있거나 바로 아래에 있는 주차장 등)에 의심차량이 주차·정차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시설 운영·보수 등과 관련된 차량은 사전에 대테러책임자 등 관계자에 의해 인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의심스러운 차량이 발견될 경우 발견자는 그 사실을 대테러책임자 등에게 보고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최근 들어 증가하는 차량돌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방된 행사구역, 축제구역, 쇼핑구역, 역사 또는 터미널 앞 광장 등에는 의심차량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차금지 구역을 설치하고, 대형 차량의 돌진에도 견딜 수 있는 차량진입 방지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단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 등의 진입은 가능토록 하여야 함)

예시 5

테러 의심자 식별 요령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주변에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물품 등이 있는지 관심을 갖고 확인·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함. 이때 외관이나 행동 또는 장소별로 눈여겨 보아야 할 테러범의 특징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외 관

1 마스크나 수염 등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모자 또는 짙은 색깔의 안경을 착용한 사람

2 필요 이상으로 옷을 두껍게 입었거나 행동이 둔해 보이는 사람 또는 외투 보관 서비스가 있음에도 외투를 맡기지 않고 객석 등 실내 행사장에 입장하려는 사람

3 테러범은 자신의 용모를 변형 시키거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노력

4 신체의 다른 부위에 비해 지나치게 배가 나왔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두껍고 긴 상의를 입었거나 땀을 많이 흘리며 눈초리가 불안한 사람



1 호텔·철도역사·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쓰레기통이나 화장실, 휴게실 등에 평범하게
보이는 가방이나 봉지를 실수인척 방치하고
현장을 급히 이탈하는 사람

2 폭탄테러의 경우 특정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기 보다는 흔히 가방형태의
시한·원격장치 폭발물을 제작해
목표지점에 방치하는 수법 사용

-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접근하여
물건을 빠뜨렸다고 알려주고 이후 행동
거지를 예의 주시하여야 하며, 자신의
소유임을 부인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재차 방치할 경우 즉시 경찰 등에 신고

3 다중이용시설 인근에 오토바이나 차량을
방치하고 현장을 급히 이탈하는 사람

- 테러범이 폭발물 장착 차량을 목표지점에
두고 도주하는 것으로 의심
- 정상적인 주차시설이 아닐 경우 즉시 차량
이동을 요구하고 행동거지가 수상할 때는
인근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 검문이
가능토록 조치

4 경찰 등 보안요원들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갑자기 뛰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

- 침착한 테러범도 보안요원에 대해서는
공포감이나 경계심을 드러냄
- 다중이용시설에서 성인이 갑자기 뛰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경우 위험한 상황을
가정하고 대처

5 고가 물품 등의 지불 수단으로
신용카드나 수표 대신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

- 테러 후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행위일 수 있음

6 국적이나 숙소를 묻는 질문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거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

- 신분노출과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테러범의
본능적인 행동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음

7 보안검색 협조 안내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



8 눈이 마주칠 경우 황급히 시선을 돌리거나 과장되게 하품을 하는 척 하는 사람



9 대화시도 시 과도하게 목소리를 가다듬거나 헛기침하는 사람

10 과장되거나 반복적으로 옷 매무새나 머리를 매만지고, 과도하게 손을 주무르고 비비거나 껌을 행위를 하는 사람

11 안전요원 접촉 또는 접근 시 다급한 행동을 표출하거나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12 불안한 모습이나 비정상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경우

13 특정 목적 없이 시설 내부를 배회하는 사람



14 상황이나 시간, 장소 등에 맞지 않게 대형서류가방, 여행용 캐리어 등 필요이상의 큰 가방을 운반하는 사람



15 가방이나 봉지 등을 실수인척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사람

- 물건을 흘렸다고 알려주고 이후 행동 주시

폭발물
적재차량의
운전자

- 1** 변덕스러운 운전을 할 때
(천천히 또는 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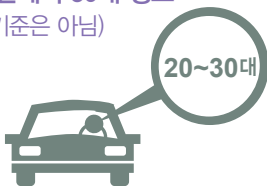
- 2**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우회를 시도할 때



- 3** 트럭 또는 장비를
서투르게 다루는 경우



- 4** 운전자의 나이는 통상
20대 중반에서 30대 정도
(절대적 기준은 아님)



자살폭탄
테러범

- 1** 계절에 맞지 않는
복장을 착용

- 2** 젊은 남녀가 군중 속에서 복장과
행동을 맞추어 이동하거나
머물러 있음

- 3** 비정상적으로 허리나 아랫배가
불룩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듯이 소심한 모습에 비정상적으로
땀을 흘림

- 4** 천천히 걷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피다 갑자기 뛰는 행동

- 5** 의도적으로 보안요원들에게서
멀리 떨어지려고 시도

- 6** 가방이나 의복, 장갑 등에서
전선이나 전기장치가 보일 경우

- 7** 착용한 옷의 형태가 아래로
당겨지거나 처져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날 경우

- 8** 주변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장갑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특히 장갑을
한 쪽만 착용하고 있거나 두 명
이상이 유사하게 장갑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 9** 자살폭탄 테러범의 경우 주로 복대
형식으로 다량의 폭탄을 상의 안에
착용하고 두꺼운 옷으로 이를 은폐,
일반적으로 테러범의 연령은 대개
20~40대 남성(절대적 기준은 아님)

- 10** 최근 과격테러단체들은
여성과 어린이까지도
자살폭탄테러 등에 이용

1 항공권 발급 및 입출국 수속 시 직원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거나 대화를 기피하는 사람

- 테러범의 불안한 심리 표현 또는 사진과 실물 대조를 방해하려는 의도일 수 있음 (위조 신분증일 경우)

2 신규·임시 발급·재발급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 정상적으로 수차 검색을 거친 여권에 비해 첫 검색 대상인 신규 여권과 상대적으로 위조가 용이한 임시 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색이 필요

3 타 여행객에 접근하여 가방·서류 봉투 등을 건네는 사람

- 테러범이 선심성 관광 또는 긴급한 응무로 귀국이 곤란 하다가나 통관 시 휴대물품이 많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폭탄 등 테러 수단을 일반 수하물로 위장, 타인을 통해 반입·반출 시키려는 의도일 수 있음

4 지나치게 특이한 여행경로와 패턴을 보이거나 출발·도착지, 여행목적 등과 휴대품·복장·일행 등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경우

- 이런 경우 테러공격의 목적이거나 테러공격 준비를 위한 사전 리허설일 경우가 있음
- 테러공격 자체가 목적이라면 목적지가 중요하지 않을 것이며, 사전 리허설일 경우 짧은 기간에 지나치게 잦은 여행 패턴을 보일 것임

5 티켓 등을 공항이나 항만 여객터미널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하는 사람

6 여권 상 여행국의 출입국 날짜·횟수 등에 대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수년전 기록된 출입국 날짜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사람

- 테러범이 위조된 여권에 대해 미처 숙지하지 못했거나 반대로 의도적으로 암기했을 가능성 의심

7 국제테러 조직 활동지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8 실물과 사진이 현저히 다르거나 영국·미국·호주 여권을 사용하면서도 영어가 서툰 사람

- 테러범의 경우 통상 다수의 가명과 위조 신분증 소지

9 직항로가 있음에도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 정정과 치안이 불안하고 테러조직의 활동이 왕성한 국가로부터 직항로를 이용할 경우 검색강화 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또는 검색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제3국에서 공범으로부터 테러 물품을 전달받아 입국 가능

10 불안한 눈초리로 주위를 지나치게 살피면서 누군가를 찾거나 공항 대테러 특공대 등 경비요원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사람

- 공범과의 접선 의도 및 범죄 의도자로서의 불안심리 표출로 의심

철도 및 지하철 역사

- 1** 철도 승차권 발급 또는 개찰구
진출입시 직원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며 대화를 기피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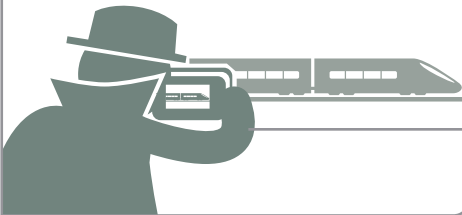


- 2** 승차권 발급 시 별 생각 없이 목적지를
번복 · 변경하는 사람

- 테러범에게 중요한 것은 테러
공격이므로 여행 목적지를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변경 · 번복할 수 있음

- 3** 철로 주변을 서성거리며 사진을 찍거나
줄자 등을 이용해 계측하는 사람

- 테러범이 폭발물 설치를 위해 사전
정찰 중일 가능성 의심
- 테러범들이 물품보관함을 연락 또는
물품 전달수단으로 이용 가능
- 물품 보관함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지
않는 장소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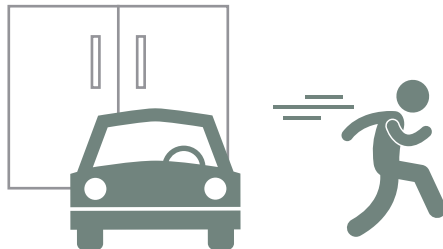
백화점

- 1** ISIL, 알 카에다 등 국제테러조직의
주요 활동지역 신분증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



- 2** 화장실 · 휴게실 · 쓰레기통 등에
가방 등 물품을 방치하거나 출입구
등 왕래가 많은 곳에 차량을 주차한
후 황급히 떠나는 사람

백화점



1 체크인 · 체크아웃 절차 시 프런트 데스크 종업원과 가급적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다른 곳을 주시하며 대화를 하는 사람

6 객실전화는 내선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람

- 공간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통화 내역을 숨기려는 행위로 의심

2 국제테러조직의 주요 활동지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 의심스러운 투숙객의 경우 호텔 내규임을 내세워 자발적 여권 제시 유도 및 확인 필요

7 처음 방문하는 지역에서도 렌트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 픽업트럭 등을 사용하는 사람

- 훔친 차량이거나 현지 공범으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일 가능성 의심

3 신규 · 임시 발급 · 재발급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8 손가방 등 수하물을 객실로 옮겨주겠다는 벨 데스크 직원 등의 제의에 대해 과민반응을 하며 수하물에 집착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

- 수하물에 폭탄 등 테러 수단 은닉 가능성 의심

4 주로 방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 테러범은 자신이 목격하는 바(테러)와 관련 없는 사고 ·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필요한 외출, 타인 접촉 등을 피하려고 노력

9 장기간에 걸쳐 룸메이드의 청소를 거부하고 룸서비스도 문밖에서만 받는 등 외부인의 방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사람

- 방 안에서 폭발물 제조 등 테러모의 가능성 의심
- 호텔 종사자는 의심자의 신상정보 (여권번호 · 생년월일 · 국적 등)를 정확히 기록 해 둘 필요가 있음
- 경비원과 객실관리자는 호텔 객실에서 전선 등 의심물품이 발견될 경우 즉시 대테러책임자 등에게 알려야 함

5 차량을 렌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 차량 렌트가 관광목적이 아니라 특정 목적(테러)을 위한 준비단계인 것으로 의심
- 실제 지난 프랑스 니스 테러에서 테러범에 의해 렌트된 트럭이 이에 해당



1 술을 주문하지 않거나 주문해 놓고도 거의 마시지 않은 채 구석자리에 앉아서 주위를 유심히 살피는 사람

• 테러범이 테러 전단계에서 목표물에 대한 사전 정찰 중일 가능성 의심

2 화장실 · 휴게실 · 쓰레기통에 가방 등 물품을 방치하거나 출입구 등 왕래가 많은 곳에 차량을 주차한 후 황급히 떠나는 사람

3 시설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관광객을 가장해 인물이 아닌 시설물의 사진을 찍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4 일반 관광객의 도를 넘어 시설물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보이거나 유심히 살피는 사람



5 공연장 등에 대형 서류가방, 여행용 캐리어 등 필요 이상의 큰 가방을 운반하는 사람

예시 6

테러 의심사항 및 보고대상 예시

의심물품 및 테러 의심자



1 시설 내·외부, 화장실 또는 쓰레기통 등에 방치된 가방·봉투 등 의심 물품

의심 물품 발견 시 조치사항

1. 의심 물품을 만지지 말 것
2. 안전한 장소로 주변 사람을 이동시킬 것
3. 다른 사람이 의심 물품이 있는 장소로 접근하지 않도록 할 것
4. 시설 대테러책임자, 국정원(111), 경찰서(112), 소방서(119) 등에 상황을 통보할 것
5. 대테러책임자는 비상대피 필요성을 판단할 것
6. 휴대폰, 무전기 등 무선 통신장비는 의심 물품과 떨어진 장소
(콘크리트 벽 뒤 등)에서 사용할 것
7. 필요시 의심 물품 발견자가 상황을 관계기관에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2 의심 물품을 실수인 척 방치하고 현장을 급히 이탈하면서 물건을 빠뜨렸다고 알려준 후에도 자신이 소유임을 부인하거나 다른 장소에 재차 방치하는 사람

3 시설 내·외부, 주차장, 물품 적·양하장, 출입문, CCTV 위치, 제한구역 등 시설물에 대해 사진·동영상을 찍거나 노트에 관련사항을 적는 등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

4 계절에 맞지 않는 두껍고 긴 상의를 입었거나 시설 내에서 마스크, 짙은 안경을 착용하는 등 얼굴을 가리고 보안요원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사람

5 중요 구조물, 전력선, 가스선, 전화선 등의 시설 설계도 또는 이와 유사한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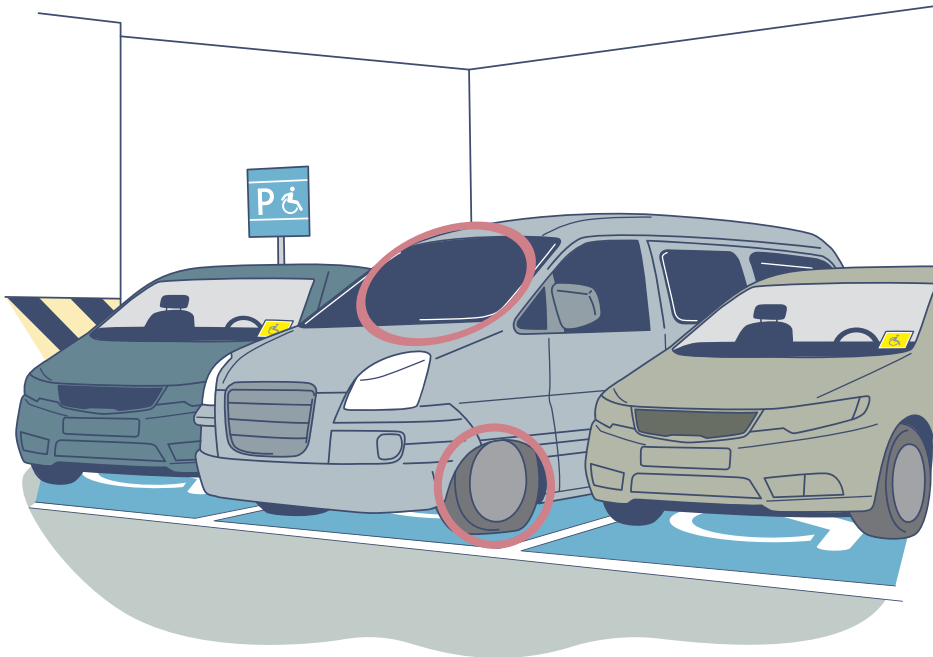
6 특별한 이유 없이 지도, GPS를 들고 시설 내·외를 다니는 사람

7 특별한 이유 없이 한 곳을 장시간 계속해서 응시하거나 일정한 구역을 계속해서 배회하는 사람

8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설 내 제한구역, 비상대피 장소·절차, 시설 이용객 수, 차량의 수, 시설 내에 있는 중요인사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확인하는 사람

테러 의심차량

- 1** 주차장 또는 시설 외부에 차량(차량 바퀴가 눈에 띄게 내려앉은 경우, 창문이 어둡거나 가려져 있는 경우, 의심스런 물건이 실려 있는 경우, 차량에 보조안테나가 있는 경우 등 이상여부 고려)을 방치하고 운전자가 급히 현장을 떠나거나 의심스러운 화물이 적재된 차량(또는 오토바이)
- 2** 혼자 또는 다수의 사람이 승차해 있는 차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장소에 장기간 주차·정차되어 있거나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배회하는 경우
- 3** 비정상적인 시간에 도착한 물품운송 차량
- 4** 가스 등 의심스러운 냄새가 나는 차량
- 5** 시설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게 보이는 차량
(예, 장애인·여성전용 주차구역에 의심스러운 물품을 실은 트럭 등)
- 6** 비정상적인 운전패턴의 차량
(통상적인 속도보다 빠르거나 아주 느린 등)



예시 7

테러상황 전파 및 긴급대응 예시



1 단계

최초상황발생

- 테러공격을 실행하려는 테러범을 발견함

2 단계

최초발견자 상황전파

- 대테러책임자에게 보고함
 - ※ 만약 대테러책임자에 대한 보고가 수 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시설 최고책임자, 다른 대테러담당자 또는 부서장 등에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수 분 내에 모든 상급자에게 연락이 모두 불가능하거나 연락되지 않을 경우, 즉시 스스로의 판단 하에 후속조치를 실행할 필요가 있음
- 국정원(111), 경찰서(112) 또는 소방서(119) 등에 신고함
- 내부 경보체제 가동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인위적으로 화재경보를 작동하지는 말 것)

3 단계

대테러책임자 초기대응

(지점장, 지사장 등이 이에 해당 될 수 있음)

- 테러유형 판단
- 테러유형별 대응방안 적용
- 시설 내 모든 인원에게 상황전파
(필요시 인접한 시설의 관계자에게 전파)
- 비상연락망 가동
- 테러대응반 동원
- 판매시설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
 - ※ 만약 해당 판매시설의 최고 책임자에게 수 분 내에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의 재량에 따라 조치할 필요가 있음
-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담당자와 협의
 - ※ 대피방안, 테러범 자체 제압여부, 구조 활동의 자체 시행여부 등의 조언을 구할 필요 있음
- 외부로의 비상대피, 시설 내 대피 필요성 등 판단 및 시행

4 단계

예시 8
참고

p.52

관계기관 도착 전까지 상황별 테러대응

- ※ 대테러책임자가 총괄지휘하며, 만약 대테러책임자가 부재 중 이거나 지휘가 불가능할 경우 대테러 담당자 중 선임자가 지휘할 필요가 있음

5 단계

관계기관 도착 후 상황 종료

- 관계기관의 지휘를 받아 상황종료 시까지 대응 임무를 실행함
- 상황종료 후 시설의 복구, 영업재개 등을 위한 활동 실행

※ 어떠한 경우에도 시설 이용자 등 인명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문화·집회시설



앞서 제시된 “판매시설”에 준함

**문화/집회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연장, 문화회관, 경기장 등 문화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대테러책임자 지정과 함께 동 시설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주최 측(행사장 운영사 포함)에서도 대테러 책임자, 테러 예방·비상대응 등을 수행할 담당자와 대응조직이 구성되고 임무·역할이 부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경찰, 소방, 응급구조대 등이 행사장에 대기하고 있는 경우 이들과 협의하여 테러상황 시 대응방안, 임무, 역할 및 조직구성 등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함

종교시설

앞서 제시된 “판매시설”에 준함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해당시설의 종교인 또는 신도 중 한 사람이 대테러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시설 내 종교인과 신도들을 대상으로 비상연락망 구축을 고려하여야 함

여객터미널



앞서 제시된 “판매시설”에 준함

여객터미널의 특수성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테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지하철 차량, 버스 등이 여객터미널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

[공항 · 항만 · 버스 여객터미널 및 철도역사]

- 자체 경비조직이 있는 경우 테러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테러범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음
- 철도경찰대가 배치된 철도역사의 경우 역사 인력 등과 공동으로 테러대응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터미널 주변에 파출소 등 경찰인력이 배치된 경우 동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함

[지하철 역사]

- 지하철 경찰대와의 협력체제를 고려하여 테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테러예방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지하철보안관 등의 보안인력을 대응조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상황발생시 모든 에스컬레이터의 작동을 중단하고 지하철 이용자의 진입을 막아야 하며, 최대한 지상으로 대피토록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선로를 따라 지하공간으로의 대피도 고려할 수 있음(단 이 경우 반드시 선로 상에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함)



의료시설



앞서 제시된 “판매시설”에 준함

의료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입원환자, 수술중인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대상들에 대하여 별도의 비상대피계획을 수립할 필요성 있음
- 테러 발생 시 병원에 보관된 병원체, 방사능 물질·장비 등이 테러범에게 탈취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하는 것이 테러예방대책에 포함될 수 있음

숙박시설



앞서 제시된 “판매시설”에 준함

숙박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비상대피 안내가 숙박시설 내 모든 이용자에게 정확히 전달 되도록 하고 대피 시 객실에 남은 사람이 없는지 확인절차를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고층 건물일 경우 고층에서의 비상탈출로와 필요시 옥상으로의 대피 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함

교통수단

도시철도



앞서 제시된 “판매시설”에 준함

도시철도의 특수성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테러발생시 즉시 다른 도시철도 차량에 대한 후속 테러에 대비하여야 함
- 도시철도 차량 자체가 공격수단이 되어 다른 차량과 충돌하거나 도시철도 역사를 공격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해당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모든 차량과 역사에 긴급대피를 고려하여야 함
- 폭발물 의심물체가 발견되거나 테러위험을 받은 경우 가능한 신속히 차량을 멈추고 대피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여객의 안전이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함)

철도차량



앞서 제시된 “판매시설”에 준함

철도차량의 특수성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승객들이 좌석 밑에 숨거나 웅크리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좌석 밑이 뚫려 있는 경우 폭발 시 파편이 날아 올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하며, 폭발이나 총기 공격 시 파편·탄환이 좌석을 뚫고 나올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 철도차량 자체가 공격수단이 되어 다른 차량과 충돌하거나 운수시설에 충돌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해당 철도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모든 차량과 역사에 긴급대피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철도경찰대가 차량에 승차해 있는 경우 다른 직원들과 협력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테러 위협 시 안전한 장소에 신속히 정착하여 여객 등을 탈출시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여객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여객선



앞서 제시된 “판매시설”에 준함

여객선의 특수성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테러발생시 다른 여객선에 대한 후속 테러에 대비하여야 함
- 여객선 자체가 공격수단이 되어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항만시설에 충돌하여 여객선과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다고 확실히 시 되는 경우 기관고장 등 임의 정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단 해상·기상 상태를 감안하여야 함)
- 폭발물 의심물체를 발견했거나 테러위험을 받은 경우 비상 탈출 가능성을 감안하여 가까운 육지 근처로 항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테러범의 진입이 어려운 내부격실로 문을 잠그고 비상대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테러공격으로 인해 여객선의 침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퇴선절차를 고려할 수 있음(테러범의 유무, 해상 상태 등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여객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항공기



앞서 제시된 “판매시설”에 준함

항공기의 특수성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항공기 자체가 공격수단이 되어 다른 항공기와 충돌하거나 지상시설에 충돌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 테러범이 다른 테러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폭파시키려고 하는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 확보가 더 이상 어렵다고 확실히 되는 경우는 테러범의 제압 시도가 필요할 수 있음

※ 어떠한 경우에도 여객 등 인명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예시 8

테러 상황별 행동요령

시설 외부에서 테러 발생 시

건물 내 안전한 장소에 머물 것



시설 내부에서 테러 발생 시

다음 상황에 따라 대처

테러 공격 이후 테러범이 사망 또는 도주 (현장에 테러범 없음)

1 화재나 건물붕괴 우려 또는 화생방 오염 등의 이유로 외부로의 비상대피가 요구되는 경우

- 위험한 장소가 어딘지 확인하고 비상대피 하는 데 위험성이 최소화되었는지 확인
- 외부로의 비상대피 실행

※ 단, 외부로 대피 시에는 집으로 귀가하는 등 멀리 이동해서는 안 되고 테러 현장으로부터 적절히 떨어진 안전한 구역에서 관계기관의 도착을 기다리고 지시에 따르도록 안내 필요

2 화재나 건물붕괴 우려 또는 화생방 오염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

- 가급적 천천히 외부로 비상대피를 실시하고 혼란 방지를 위해 위험 요인이 제거된 사실을 대피인원들에게 방송 등으로 고지할 필요성 있음(화재 경보 작동 금지)

3 화재나 건물붕괴 우려 또는 화생방 오염 등의 우려는 없지만 해당 시설 외부에서 현재 테러범에 의한 테러공격이 실행되고 있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 테러 현장으로부터 벗어난 곳이나 실내 안전장소에 대기토록 안내 하고 가급적 외부 상황을 관찰 ·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시설내로 테러범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모든 출입구를 무거운 물체 등을 이용하여 봉쇄하여야 함. 단 유사 시 내부에서 시설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통로는 확보하여야 함

4 화생방 테러 시에는 비상대피 후 내부의 화생방 물질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모든 문과 환기통로 등을 막을 필요가 있음

5 화재 발생 시에는 화재 진압반을 가동하여 화재 진압을 실시함

6 가능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대응팀을 가동하여 구조, 구호, 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관계기관의 도착을 기다려야 하며, 관계 기관의 도착 후에는 그 지시를 따라야 함

테러범이 현장에 있는 경우

1 외부로의 비상대피가 가능하거나 화재나 건물붕괴 또는 화생방 오염 등이 함께 진행되어 건물 내 머무르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 위험한 장소가 어딘지 확인하고 비상대피하는 데 위험성이 최소화 되었는지 확인
- 외부로의 비상대피 실행

※ 단 테러범이 비상대피로 통로나, 계단, 출구 등에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에 주의 하여야 하며 CCTV 등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전한 통로를 알려 줄 필요가 있음

예시 9 참고 p.58

2 테러 공격 이후 화재나 건물붕괴 우려 또는 화생방 오염 등의 우려가 없으나, 테러범의 지속되는 공격 때문에 외부 비상대피가 어려울 경우

- 실내 폭발이나 총기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격실, 대피 공간, 기둥 뒤 등에 몸을 숨기고 관계기관의 도착을 기다려야 함

예시 10 참고 p.60



테러범의 인질로 잡혀있는 경우

테러범이 인질을 해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질을 잡고 대처하여
관계당국과 협상상황으로 진전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이
결정되어야 함

• 협상상황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

가급적 테러범을 자극하지 않고 테러범의 지시에 따라 협조할 필요성 있음

• 인질을 해칠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

대테러 특공대 등 관계기관의 도착을 기다릴 여유가 없이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직면하고 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인질들이 힘을 합쳐 테러범에
저항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저항방법 예시

- 공동으로 저항하여야 함
- 테러범의 주위를 신만하게 한 후(예, 소리지르기) 공격할 것
- 총기의 탄창을 교체하는 등 적당한 시기를 이용할 것
- 사물을 던지거나 무기가 될 만한 물건을 사용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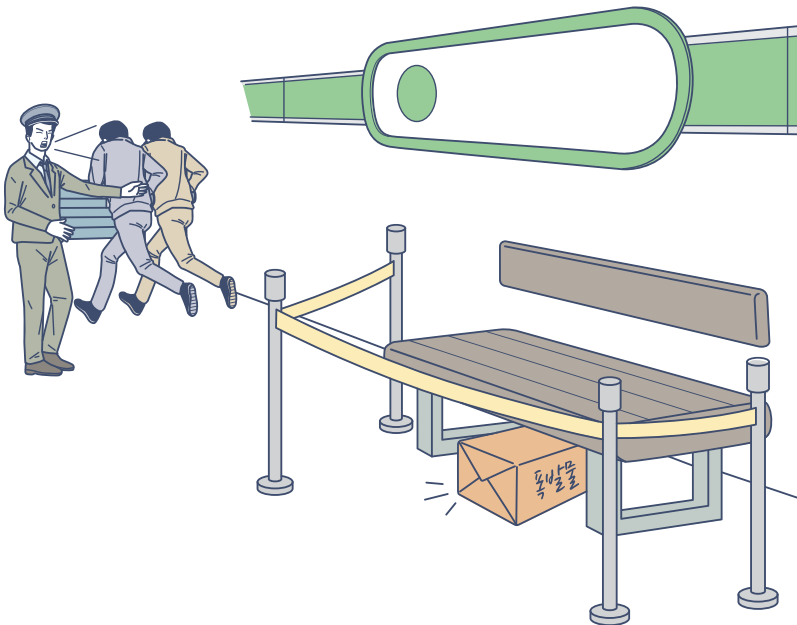
테러범이 인질을 해할 것인지 개연성 판단 시 아래의 징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테러범이 “신은 위대하다(알라 후 악바르)”라고 외친 사실이 있음
- 이미 한 명 이상의 사람을 무기를 사용하여 해하였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혔으며, 이러한 행위를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지속하려고 하고 있음
- 테러범이 총기, 실탄, 폭발물, 도검 등을 소지하고 있음
- 폭발물 등을 인질들의 몸에 묶어 놓고 있음
- 테러범들이 자살폭탄 조끼를 착용하고 있음
- 테러범들이 다른 인질들을 가학적으로 대하거나 다른 인질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정서적 교감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함

테러범은 현장에 없으나 폭발물이 발견된 경우

대테러책임자는 폭발물의 위치 등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비상대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시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필요시 경찰의 조언을 구하여야 함)

- 폭발물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
- 절대 의심물체를 만지거나 건드리거나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변 정리
- 철도, 여객선, 항공기 등의 경우 운항 중 폭발물 발견 시 승객들을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안내하고 좌석 밑에 눕거나 웅크리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좌석 밑이 뚫려 있는 경우 폭발 시 파편이 날아 올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함)
- 소화기 등 화재진압 도구와 화재진압 대응팀을 준비시켜 폭발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
- 폭발효과로 인하여 건물이 붕괴되거나 손상될 가능성에 대비



흉기 테러의 경우

- 1 테러범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벗어나도록 안내할 것



- 2 도망칠 수 없을 시 보호물을 갖고 스스로 보호할 것
(예 : 가방, 의자, 옷으로 팔뚝 감싸기 등)

- 3 주위의 사물을 대응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것

- 4 다수와 함께 저항 하고 대응하기 전 주위 사람들과 소통할 것

※ 테러범은 피해자나 인질이 공동으로 대응하면 불안해할 수 있음

화생방 테러가 의심되는 경우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같은 증상을 보일 경우)

- 1 침착하고 가능한 빠르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토록 안내할 것

- 2 증세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는 것을 최대한 예방할 것

(예 : 옷을 벗거나, 씻어내도록 하는 등)

- 3 국정원⁽¹¹¹⁾, 경찰서⁽¹¹²⁾ 또는 소방서⁽¹¹⁹⁾ 등에 오염 의심 지역 · 인원 수 및 증상 등을 최대한 빠르게 신고할 것

(신고 시 증상에 따른 초기 대응 조치를 문의하고 관계기관 도착 전 까지 시행할 것)

- 4 얼굴을 문지르지 말고, 마시지 말고, 먹지 말고, 담배피지 말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도록 안내할 것



예시 9

시설 외부로 비상대피 할 경우 행동요령



1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인위적으로 화재경보를 작동하지는 말 것

2 가장 노출이 안 되고 가까이에 위치한 출구를 이용할 것

3 알고 있는 길을 택할 것

4 비상탈출로의 전체계획을 세우고 머릿속에 그릴 것

5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것

6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이 대피하는 것을 도울 것



7 소지품은 남겨두고 미련을 갖지 말 것

8 테러범이 있을지도 모르는 구역에 들어가지 말 것



9 항상 양손이 보이도록 할 것

- 극도로 흥분되고 긴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손을 뒤로하거나 호주머니에 넣는 행동 등은 마주치는 상대방에게 무기를 감추고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음

10 경찰 또는 관계기관 요원을 만나면 지시에 따를 것

- 그들은 당신과 테러범을 구별하지 못함

11 부상당한 사람을 함부로 움직이려 하지 말 것

- 척추 등을 다쳤거나 기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부상자를 옮기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음



12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경고할 것

13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국정원⁽¹¹¹⁾, 경찰서⁽¹¹²⁾ 또는 소방서⁽¹¹⁹⁾ 등에 신고할 것

예시 10

시설 내부에서 비상대피 할 경우 행동요령

1 테러범이 찾지 못할 것 같은 장소에 몸을 숨길 것

2 은신처는 테러범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이어야 함

3 책상과 캐비닛 등 단단한 장애물들을 설치한 후 누워있을 것

4 긴박한 경우에 움직여야 하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고립되어 갇힌 공간은 피해야 함

5 모든 불을 끌 것

6 벽이나 문, 창가로부터 떨어져 있을 것

7 테러범이 은신처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문을 잠그거나 무거운 가구, 매장 내 진열품 등 각종 도구나 장비, 설비 등을 동원해 입구를 봉쇄해야 함



8 당신이 있는 방향으로 충격이 가해진다면 몸을 보호할 것

- 사무실의 문을 닫고 잠그거나 벽 뒤에 숨거나 급박한 경우에는 주위의 물체도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벽이 될 수 있으며, 이 때 총탄이나 폭발물의 파편이 관통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두껍게 방어벽을 설치해야 함 또한 유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간이 뚫린 곳이 없는지 유의해야 하고 있다면 막아야 함

9 휴대폰의 소리를 묵음으로 전환하고, 테러범이 위치추적을 할 수도 있으므로 휴대폰을 끄고 필요할 경우에 켜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것



10 가급적 통화보다는 소리가 나지 않는 메시지 등이 바람직 함

11 유선 전화기의 수화기는 울리지 않도록 선을 떼어놓고 주변에 소리가 날만한 것들은 모두 꺼야 함

12 조용히 기다려야 함

13 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 곁에 가서 안심시킬 것

14 숨거나 도망치지 못하고 목숨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저항을 고려할 것

저항방법 예시

- 공동으로 저항하여야 함
- 테러범의 주위를 산만하게 한 후(예, 소리지르기) 공격할 것
- 총기의 탄창을 교체하는 등 적당한 시기를 이용할 것
- 사물을 던지거나 무기가 될 만한 물건을 사용할 것

테러 신고는

국정원 111

경찰서 112

소방서 119

발행처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발행일	2017. 2월
기획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편집/디자인	(주)네오그린토탈디자인 Tel 02. 588. 0283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